

과업지시서

사업명	빛마루방송지원센터 UPS용 노후축전지 구매·설치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2024. 6.



빛마루방송지원단 빛마루사업관리팀

<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>
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, 공정한 거래.상생문화를 정착·확산하도록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.

- (1)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·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.
- (2)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, 사업기간 연장,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,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.
- (3) 사업의 특성,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'간접비'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4)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5)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, 민원해결,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6) 천재지변,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7)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·자료·물건 등의 소유·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8)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,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9)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, 분쟁조정신청,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10) 계약해제·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,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,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11)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
- (12)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,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,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,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또는,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,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,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,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13)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.
- (14)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.
- (15)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.
- (16)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,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,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.

<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>

- ▶ 하도급업체에 대한 ▲계약서 교부의무, ▲법정기한내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, ▲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
- ▶ 하도급업체에 대한 ▲부당한 거래조건(특약) 설정, ▲하도급대금 부당 결정·감액, ▲부당한 위탁취소, ▲부당 반품, ▲기술자료 부당 요구, ▲기술유용, ▲경영간섭, ▲보복행위 등

- (17)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·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,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(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)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.
- (18) 한국방송통신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·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.

< 기타사항>

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 (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-307, 2018.8.31.) 이에 우리 진흥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상호간 인권존중·보호의무를 준수하고, 협력회사에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합니다.

| 사업개요

1. 목적

본 용역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빛마루방송지원센터(이하 ‘발주자’라 한다.)가 운영하고 있는 UPS용 노후축전지를 교체하여 각종 전기설비의 원활한 운용 및 중요부하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UPS 축전지 납품업체(이하 ‘계약상대자’라 한다.)와 계약된 과업 대상물에 대한 교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사업명 : 빛마루방송지원센터 UPS용 노후축전지 구매·설치

3. 과업 대상

- 가. 소재지 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(장항동, 빛마루)
- 나. 건물명 : 빛마루방송지원센터
- 다. 사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90일
- 라. 과업대상물 : UPS(1, 2, 3호기)용 축전지 540셀
- 마. 사업예산 : 161,773,000(부가세 포함)
- 바. 공동계약방식 : 불가
- 사. 분할 납품 : 불가

4. 입찰참가자 자격

- 가.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.

-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」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추고, 상기 물품 납품이 가능한 자

※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(G2B) 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,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(<http://www.g2b.go.kr>)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.

-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」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까지 「밀폐고정형납축전지(세부품명번호 2611170701)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」
-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업체
 - ※ 본 사업은 축전지를 교체·설치하는 공사로 축전지 설치는 「전기공사업법」 제2조제1호 및 「전기공사업법 시행령」[별표1] 전원설비에 해당되는 전기공사의 종류임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「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
 - ※ 중소기업·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(www.smpp.go.kr)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.
 - ※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「조세포탈 등을 한 자」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 - ※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·해지를 당할 수 있고,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(다만,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동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.)

II | 과업지시서

1. UPS 설비 현황

구 분	규 격	수 량	운영시기	설치장소
UPS (1~3호기) 교체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출력전압: 3상 AC380/220V 60Hz - 용 량: 400kVA (1호기: 단독, 2,3호기: 병렬) - 축전지 : KBX-21600 2V 1600AH, 180셀 	3대 (540셀)	2013년 ~현재	지하4층 UPS실
UPS (4~7호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출력전압: 3상 AC380/220V 60Hz - 용 량: 100kVA (4,5호기: 병렬, 6,7호기: 병렬) - 축전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4, 5호기: MSBS 2V 250AH, 192셀 x 2 · 6, 7호기: MSBS 2V 250AH, 192셀 x 2 	4대	"	"
BMS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어부: BM-Master((주)제신정보) - 센서부: 축전지 4대당 1개 감시센서 연결방식 (전압, 내부저항, 온도 측정) 	327개	"	"

2. 교체 대상

구 分	규 격	수 량	비 고
UPS용 축전지 (1호기)	MSBS 2V 400AH (무보수 무누액 밀폐형)	180 셀	단독 운전 (기존 2V 1600AH → 2V 400AH로 변경)
UPS용 축전지 (2호기)	"	180 셀	병렬 운전 (기존 2V 1600AH → 2V 400AH로 변경)
UPS용 축전지 (3호기)	"	180 셀	병렬 운전 (기존 2V 1600AH → 2V 400AH로 변경)
축전지관리시스템 (BMS) 센서	o 센서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축전지 4대당 1개 감시센서 연결 방식의 기존센서 분리 후 재설치 - 센서 재사용, 센서 전원선·신호선· 클램프 등 신품으로 교체 	135 개	기존 센서 1호기: 45개 2호기: 45개 3호기: 45개

3. 관련법규

- 가.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준하여 축전지 구매·설치를 시행하며,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기타 안전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단, 계약체결 후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.
- 나. 본 사업은 아래 법령 및 규정(이하 “관계법규”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.
- 1) 전기공사업법,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
 - 2)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령 규칙
 - 3) 산업표준화법(한국산업표준(KS) - KS C 8518
 - 4) 한국산업규격 KSC 8518 인증제품
 - 5) 한국전력공사표준규격(E.S.B), 국제전기표준규격(I.E.C)
 - 6) IEEE(축전지 관련) 규정
 - 7) 폐기물관리법
 - 8) 친환경인증법
 - 9)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규칙 등
- 다. 축전지는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기술지원을 위해 국내에서 전량 생산된 제품이어야 하며, 조립공정에 대한 공장검수를 실시할 수 있다.
- 라. 축전지는 MSBS규격의 무보수(무누액) 밀폐형으로서 한국산업표준(KS) 규격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.
- 마. 품질경영시스템(ISO 9001) 및 환경경영시스템(ISO 14001) 인증을 획득한 제조사의 제품이어야 한다.
- 바.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.
- 사.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축전지 구매·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 법령에 준용하여야 한다.
- 아. 본 사업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

법규에 따라 시공하되, 반드시 사전 “발주자” 와 협의 후 진행 한다.

- 자. 축전지는 본 과업지시서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치일 기준 90일 이내에 제작된 신품이어야 한다.

4. 일반원칙

- 가. 본 과업지시서는 축전지 납품 및 시운전 등 모든 공정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‘계약상대자’ 는 과업지시서의 내용대로 이상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.
- 나. 본 과업지시서의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이므로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축전지 등의 납품 목적을 위한 필요사항 일체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다. 축전지 납품 시 결함사항을 조치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‘계약상대자’ 부담으로 한다.
- 라. 축전지 납품 시 연동 중인 기존 운영 장비 및 시스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- 마. 축전지 납품 후 시운전시험을 거쳐 정상적으로 운용이 확인 되었을 때 ‘발주자’ 의 확인 후 납품 완료 처리한다.

5. 사용자재 및 작업방법

- 가.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기구적으로 견고하며 설치장소의 특수성을 충족하는 양질의 것으로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- 나. 축전지의 단자는 볼트-체결 식으로 축전지간 Cable or Connector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다. UPS에서 축전기까지의 배선은 UPS 및 축전지의 용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Cable을 사용하여야 하며, 기존의 Cable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축전지의 용량을 충분히 수용하는 적합한 Cable로 신설하여야 한다.
- 라. 축전지 단자 조임 시에는 적정압력으로 조여서 단자의 마모나 접촉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.

- 마. 축전지를 신품으로 교체 한 후 폐축전지는 반드시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바. ‘계약상대자’는 사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‘발주자’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사. ‘계약상대자’의 부적절한 포장, 납품 및 설치 등으로 인하여 기자재 손실,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‘계약상대자’가 진다.

6. 시공관리책임자 및 종사원

- 가. ‘계약상대자’는 현장설치 시 축전지 교체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시공관리책임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.
- 나. 현장 작업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 ‘발주자’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, ‘계약상대자’는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
7. 현장안전관리

- 가. ‘계약상대자’는 사업 착수 전 안전관리계획서 및 도급사위험성 평가(평가표 포함) 등을 제출하여 ‘발주자’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나. 작업 착수 전 ‘계약상대자’가 지정한 시공관리책임자는 ‘발주자’로부터 안전작업허가서를 받고 작업에 임한다.
- 다. ‘계약상대자’는 작업 전 안전교육과 현장 TBM(Tool Box Meeting)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- 라. ‘계약상대자’는 현장 설치 시 일상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소음, 분진 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.
- 마. ‘계약상대자’는 현장 설치 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납품·설치하여야 하며, 부득이 손상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‘계약 상대자’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한다.
- 바. ‘계약상대자’는 현장 설치 시 정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- 사. ‘계약상대자’는 「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제정·시행에

따른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.

- 1) ‘계약상대자’는 계약체결 이후 「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·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, 입찰자는 현장여건,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2) ‘발주자’는 「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9호에 따라 ‘계약상대자’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·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·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3) ‘발주자’는 ‘계약상대자’가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‘계약상대자’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아. 안전장구 관리 철저

- 1) 안전장구(안전모, 절연장갑 등)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현장에 비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- 2) 작업원은 안전장구를 펼히 휴대·착용하여야 하고 그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.
- 3)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정표(작업계획 포함)에 따른 진행을 ‘발주자’와 사전 협의하고, 작업 중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.
- 4) 중량물 운반 시는 반드시 중량물 운반수칙을 준수한다.

자.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

- 1) ‘계약상대자’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도급사위험성평가(평가표 포함)를 작성하여 ‘발주자’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2) ‘발주자’는 ‘계약상대자’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도급사 위험성평가(평가표 포함)를 기준으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미비한 부분은 ‘계약상대자’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.
- 3) ‘계약상대자’는 축전지 교체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책임자

(안전관리책임자 겸임 가능)를 현장에 배치하고, 사업 시행 시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.

- 4) ‘계약상대자’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산업안전보건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시행 전 안전 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, 사고 발생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차. ‘계약상대자’는 본 설치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 및 기타 모든 재해에 따른 책임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8. 납품·설치 관리

- 가. ‘계약상대자’는 일일작업 및 작업예정사항, 시행방법 등을 문서 (작업일지)로 ‘발주자’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나. 현장 설치 시 일상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소음, 분진 등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다. 현장 설치 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, 부득이 손상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‘계약상대자’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- 라. ‘계약상대자’는 교체되는 축전지 용량 및 규격에 맞게 설치 완료 후, UPS와 축전지간 연동 시험을 실시하고 전원공급 대상 주요 장비에 안정적으로 전원공급이 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 - 1) 축전지 단자 결속 상태
 - 2) 축전지 단자대별 캡 장착
 - 3) 케이블 정리 상태
 - 4) 내부저항 계측기를 사용하여 개별 충전전압, 내부저항 측정 제출
 - 5) 기타 ‘발주자’에서 필요시 요구하는 사항
- 마. 기존 철거한 폐축전지 제품은 ‘계약상대자’ 부담으로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, 폐기물처리 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바. 본 과업지시서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 명시하였으므로 규격서의 누락 또는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시스템 설치·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‘계약상대자’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.
- 사. 투입인력, 작업공정, 장비반입, 작업내용, 작업시간, 시험 등 사업수행 관련 모든 사항을 ‘발주자’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며, 주요 현안과 작업공정의 자연사항에 대하여 현황과 대처방안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- 아.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및 용어 해석에 대하여 ‘계약상대자’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9. 시설보안

- 가. ‘계약상대자’는 외부로의 자료유출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을 져야함은 물론 ‘발주자’에게 즉시 알리고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나. 기타 보안에 관한 사항은 ‘발주자’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
10. 준공검사

- 준공이라 함은 ‘발주자’가 요구하는 모든 기능이 완료되고 준공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준공검사에 합격된 후를 준공이라 한다.
- 가. 축전지 설치 완료 후 ‘발주자’ 입회하에 시행하며, 각종 검사업무 및 UPS와 관련된 모등 사항은 ‘계약상대자’의 부담으로 한다.
- 나. 축전지 교체 전·후와 충·방전 시험 후의 개별 전압을 측정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.
- 다. 축전지 교체 후 충·방전 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.
- 라. 축전지 교체 후 UPS의 출력 및 충전 전압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.

11. 하자담보기간

- 가. 납품 설치된 모든 제품은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검수일로부터 하자보증기간은 3년(하자보증율 3%)으로 한다. 또한, ‘계약상대

자’ 의 부실시공 또는 물품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교체하며, 해당 제품 제작업체에서 발행한 품질보증서(시험성적서)를 제출한다.

- 나. ‘계약상대자’ 는 축전지의 설치 및 충·반전 시험과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 전반적인 성능보장의 책임을 지며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축전지 하자 발생으로 타 시설물에 피해 및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‘계약상대자’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- 다. 납품·설치 결과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되는 성능·사양보다 기준 미달이 될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.

12. 유의사항

- 가. 본 과업지시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은 납품될 수 없으므로,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
- 나. ‘계약상대자’ 는 착수 전에 기존 물품의 규격에 대하여 사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노후 부품 교체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다. 축전지 설치 시 발생되는 UPS 병렬운전 운영, 충전전압 조정, 시스템 정상화, 비상조치 등을 위하여 현장에 투입된 ‘발주자’의 유지보수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설치완료를 하여야 한다.
- 라. 축전지 설치 작업 시 사전 빛마루의 UPS 구성 및 전원공급 상태를 확인하고, 부하의 전원공급에 중단이 없도록 조치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마. 축전지 교체 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축전지관리시스템(BMS)의 센서 분리 및 재설치 등에 관련된 비용은 “계약상대자”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 기존 축전지관리시스템(BMS)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- 바. 신규 축전지 교체에 따라 기존 철가대 변경이 필요한 경우, “계약상대자” 부담으로 제작 또는 개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사. 각종 볼트, 너트의 조임은 대칭적으로 시행해야 하고, 각종 장비 또는 PCB 등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- 아. 분해 조립 중 부속자재 파손 시에는 ‘계약상대자’ 부담으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.
- 자. 축전지 설치 완료 후 UPS설비 정상가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, 이상 발생 시 즉시 ‘계약상대자’ 부담으로 복구하여 최상의 상태로 정상가동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적용범위

본 특기사항은 빛마루방송지원센터 무정전전원장치(UPS) 축전지의 구매·설치에 수반되는 기술사항 및 현장 설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.

2. 설치환경

‘계약상대자’가 납품·설치하는 모든 제품은 아래 조건 하에서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.

- 가. 설치장소 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60, 빛마루방송지원 센터 지하4층 전기실 내
- 나. 주위온도 : -15°C ~ +45°C
- 다. 습도 : 상대습도 95%이하

3. 적용규격

- 가. 축전지의 물품규격 및 수량

구 분	규 격	수 량	비 고
UPS용 축전지 (1호기)		180셀	<u>단독 운전</u> (기존 2V 1600AH → 2V 400AH로 변경)
UPS용 축전지 (2호기)	MSBS 2V 400AH (무보수 무누액 밀폐형)	180셀	<u>병렬 운전</u> (기존 2V 1600AH → 2V 400AH로 변경)
UPS용 축전지 (3호기)		180셀	<u>병렬 운전</u> (기존 2V 1600AH → 2V 400AH로 변경)

- 나. UPS운영현황

구 分	규 격	수 량	운영시기	설치장소
UPS (1~3호기) 교체대상	- 입출력전압: 3상 AC380/220V 60Hz - 용량: 400kVA (1호기: 단독, 2,3호기: 병렬) - 축전지 : KBX-21600 2V 1600AH, 180셀	3대 (540셀)	2013년 ~현재	지하4층 UPS실

- 다. ‘계약상대자’는 기존 축전지 구성 및 설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, UPS구성 및 설치조건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·설치하여야 한다.
- 라. 축전지 크기는 기존 축전지함에 설치하여 축전지의 인·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마. 축전지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제작된 제품으로, 각 축전지는 모두 동일 품목이어야 한다.

4. 축전지 납품·설치 준수사항

- 가. ‘계약상대자’는 충전된 상태로 축전지를 납품한다.
- 나. ‘계약상대자’는 축전지 교체 전 교체일시, 방법 등을 충분히 협의 후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시간(토·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)에 설치완료 될 수 있도록 ‘발주자’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다. 축전지 교체 시 축전지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, 축전지 간의 연결 케이블(기타 부자재 포함)은 공인된 규격의 신품으로 한다.
- 라. ‘계약상대자’는 축전지 설치 후, 충·방전 시험 시 UPS 및 축전지 오동작으로 인해 출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,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‘발주자’의 현재 UPS유지보수업체 직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.

5. 작업내용

- 가. ‘계약상대자’는 납품된 각 축전지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명, 정격용량, 제조사명, 제조년월, 취급상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.
- 나. ‘계약상대자’는 교체된 노후 축전지를 폐기물관리법 산업폐기물 처리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고,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‘계약 상대자’가 부담하여야 한다.
- 다. ‘계약상대자’는 축전지 설치 전·후와 충·방전 시험 후 개별 축전지의 내부저항 및 전압측정을 통하여 불량 제품은 즉시 교체 및 재설치하여야 한다.

라. ‘계약상대자’는 설치 완료된 각 축전지에 사후 관리가 용이하도록 일련번호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.

6. 안전관리

- 가. ‘계약상대자’는 착공 시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서 및 도급사위험성 평가(평가표 포함)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, ‘발주자’의 보완지시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나. ‘계약상대자’는 현장 작업자가 항상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일반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며,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 및 기타 모든 재해에 따른 책임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다. ‘계약상대자’는 작업 수행상 별도의 안전장구, 안전표지판 및 안전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 개시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 제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- 라. ‘계약상대자’는 작업 전 다음 사항을 현장 작업자에게 주지 시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1) TBM(Tool Box Meeting) 실시
 - 작업범위, 작업자별 업무 및 안전교육 등
 - 2) 안전장구 착용 철저
 - 전기작업 시 절연장갑, 절연화, 활성경보기 등 착용필수

1. ‘계약상대자’는 축전지 제작 규격서 1부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‘발주자’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, 아래 목록의 서류 및 자료는 ‘발주자’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.

가. 착수 시 제출서류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1) 착수계(예정공정표 포함) | 1부. |
| 2) 현장대리인계 | 1부. |
| 3) 참여인력 현황 및 작업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| 각 1부. |
| 4) 안전·환경관리계획서 | 각 1부. |
| - 안전작업계획서, 도급사위험성평가(평가표 포함) | |
| - 근로자안전서약서 | |
| 5) 현장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| 1부. |
| 6) 기타 ‘발주자’가 요구하는 서류 | |
| - 산재·고용보험 가입 후 가입증명원 등 | |

나. 납품 시 제출서류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1) 축전지 납품·설치 확인서 | 1부. |
| 2) 납품 상세 내역서 | 각 1부. |
| - 제조사, 제조일자, 제조번호(일련번호), 규격 | |
| 3) 축전지 제조사 품질보증서(시험성적서) | 1부. |
| 4) 취급설명서 및 유지보수지침서 | 1부. |

다. 납품·설치 완료 시 제출서류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1) 준공계 및 용역완료보고서 | 각 1부. |
| 2) 준공검사원(점검확인서 포함) | 1부. |
| 3) 준공사진첩(설치 전·중·후 및 각 공정 사진 포함) | 1부. |
| 4) 축전지 충전전압 및 내부저항 측정표 | 각 1부. |
| 5) KS인증서, 친환경인증서, 제품보증서 | 각 1부. |
| 6) 제조사 정품공급확인서 | 1부. |

- 설치일 기준 90일 이내 생산제품
- 7)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1부.
- KS 인증품일 경우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
- 8) 하자이행보증증권 1부.
- 9) 폐기물처리확인서 1부.
- 10)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

2. 사업 관련 문의

- 업무담당자 : 유 광 재 (KCA 빛마루사업관리팀)
 - 연락처 : 031-8073-0103 / 이메일 : gjyoo@kca.kr
- 기술담당자 : 김 광 민 (KCA 빛마루사업관리팀)
 - 연락처 : 031-8073-0111 / 이메일 : 11196@kca.kr